

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3342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18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」은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,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(사회복지시설)임
- 나. 서울형 키즈카페(시립 길동생태공원점)은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다.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기관명 :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
- 위치 : 강동구 천호대로 1298(길동생태문화센터 내 1층)
- 규모 : 전용면적 280m², 지상 1층
-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: 아동 32명(회당) / 종사자 4명

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「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」 운영 및 관리
 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
 - 조직·인사관리, 회계·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관리
- 위탁기간 : 5년(2026.4. ~ 2031.3.) ※ 예정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 - '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('25.9.24.)
- '26년 소요예산(안) : 271백만원(민간위탁금, 민간위탁사업비)
 - 인건비 : 109백만원 / 운영·사업비 : 72백만원 / 기자재비 : 90백만원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, 제7조의 2(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)
 - 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
 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 위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민간위탁 필요성
 -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, 운영 사무를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,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적,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]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]

-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

[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 2(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)]

-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]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[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]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2. 위탁계약기간
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이동요 (☎2133-4804)